

기 조 발 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

[목 차]

1. 개인정보 이동권 의의와 입법 현황
2. GDPR의 Right to data portability과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비교
3.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 범위 –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중 주문내역정보 포함 여부에 관한 최근 논쟁 및 진행 경과
4.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관련 주요 쟁점

1. 개인정보 이동권 의의와 입법 현황

가. 개인정보 이동권의 의의

- 개인정보 이동권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새로운 기본권 내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강화
- 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특정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EU GDPR Article 20)

나. 입법 현황

(1) EU GDPR 제20조에 최초 규정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규정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예정

2021. 1. 6.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2.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와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의 지원
2.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및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이하 생략)

-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전송요구권 규정 신설

✓ 취지 : 금융 이외의 타 산업분야로의 권리 확대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2년 시행) - 개인정보이동권 규정 신설

보유 개인 데이터 공개방법에 대해 전자적 기록 제공을 포함하여 본인이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28 ①②)

2. GDPR의 Right to data portability과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비교

가. GDPR의 정보 이동권(Article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 ①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②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

Article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where:

(a) the processing is **based on consent** pursuant to point (a) of Article 6(1) or point (a) of Article 9(2) or on a contract pursuant to point (b) of Article 6(1); and

(b)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by automated means**.

2. In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data portabilit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personal data transmitted directly from one controller to another, where technically feasible**.

-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다만 기술적으로 이와 관련한 처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Recital 제68조).

"The data subject's right to transmit or receiv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should not create an obligation for the controllers to adopt or maintain processing systems which are technically compatible**."

[Why] 개인정보 이동권을 GDPR은 다운로드권을 주된 권리로 규정하고, 전송요구권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 구성하였는지?

- WP29 의견서는 GDPR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이고 경쟁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표현

“Whilst the right to personal data portability may also enhance competition between services (by facilitating service switching),
the GDPR is regulating personal data and not competition”

- ✓ GDPR 성립과정에서, 영국은 데이터 이동권을 소비자 보호 내지 경쟁법의 영역으로 보고 이를 GDPR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 덴마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도 비슷한 문제 제기

(법제연구원, 제5차 규제혁신법제 포럼 -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임 과제[2020. 10. 6.] 전용준 변호사,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 토론회)

- 개인정보 접근권과의 관계

- ✓ Right of access(Article 15)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와 관련해 컨트롤러로부터 확인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권을 가짐(즉, 처리여부 확인권 + 본인 개인정보 및 그 처리사항 열람권)

나.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일정한 자 - 본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등 - 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33조의2).

[Why?]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우선적으로 도입된 이유

- 금융분야의 경우 전자금융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처리되는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표준화되어 있는 점
- 정보보안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 의무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가능
- 특징
 -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권 이외,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송요구권 형태로 권리 규정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과 연계
 -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의무대상자, 제공 받는 자, 대상 정보 등을 일일이 규정
-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정보의 구체적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그 범위 설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포인트 정보, 주문내역정보, 결제정보 등)도 이에 포함됨.

3.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 범위 –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중 주문내역정보 포함 여부에 관한 최근 논쟁 및 진행 경과

가. 이해관계인의 주장 요지

- 금융기관

-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ICT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 빅테크 기업들과의 역차별
- ✓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 취지라는 점

- ICT 기업

- ✓ 영업 노하우, 영업비밀적 성격을 갖는 정보가 포함된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가 금융기관 등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될 경우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큼
- ✓ 전자금융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의 경쟁력 약화,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등

- 학계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법정책학회 등)

나.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2020. 11. 12.)
 - ✓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 방안에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0. 12. 17.)
 -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 정보 항목에서 '주문 내역 정보'를 삭제하도록 금융위에 정책 권고하기로 의결
 - ✓ 주문 내역 정보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지적

4.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관련 주요 쟁점

가. 문제 의식

-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에 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본래의 법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기업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 - 정보주체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과도한 정보 전송 등으로 인해 정보 인권 내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 제기
- 전송요구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의무대상자, 제공을 받는 자, 제공 대상 정보, 제공 방식 등을 일일이 법률에서 규율하여야 하는바,
 - ✓ 이러한 규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 ✓ 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 논의 사항

[법제도 관련]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신용정보법상의 전송요구권 조항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일반적 권리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1) (EU GDPR 20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이동권을 참고하여)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다운로드권을 이동권의 핵심권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 (2) 전송요구권은 기존 개인정보 주체에게 인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포섭되는 권리인가?
 - (3) 전송요구권의 경우 개별 산업별로 도입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여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없는가?
 - (4) 개인정보 이동권 중 정보 전송권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한, 고착 효과(lock-in)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k.a 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정보 전송권은 데이터 독점이 문제되는 산업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도입 관련 논의 참조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내지 개선책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 관련]

-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동권이 필수전제되는 권리인가?
-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시장 형성 초기에 정부가 해 주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금융 분야 이외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데이터관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인정하여 모든 사업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가치 있는 데이터의 생성, 저장 등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위축할 것인지? 위축할 경우 해결 방안은?
- 전송과 관련하여 비용을 보전하거나 데이터 생성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유통을 활성화할 것인가?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ex. 정보주체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기업에 대한 신뢰
 - 정보보안 수준 – 정보보호(보안) 인증 제도 활용
 - ex. 정부의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데이터 가버넌스 체계 구축

끝.